

2019년 2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 "나는 가장이다" 사업 신청 안내문

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(임차보증금 대출) 을 시행합니다.

1. 사업 개요

- 가. 사업명 : 2019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「나는 가장이다」
- 나. 주관/주원 :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, 시민주택금융재단
- 다. 사업내용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
 - ※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중인 (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) 세대는 최대 3백만원
- 라. 사업대상 :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한부모
- 마. 상환방법 : 거치기간 없이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상환
- 바. 대출규모 : 총 ○○세대 (2019년 2차)
 - ※ 신청자가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사를 통해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

2. 사업 내용

- 가. 대출금액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(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)
 - ※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환 조건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

○ 전 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(신규 계약서 비교하여 상환 보증금액 확인)

- 1)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환된 경우 : 750만원 - 500만원 = 250만원 (⇒대출 가능금액: 250만원)
- 2) 기존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상환된 경우 : 800만원 - 200만원 = 600만원 (⇒ 대출 가능금액 500만원/본인 부담금액 100만원)
- 3) 임대주택: 보증금 5,000만원(본인부담금 250만원)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8,000만원 (본인부담금 400만원)으로 상환된 경우 : 4000만원 - 250만원 = 150만원 (⇒대출 가능금액: 150만원)

다. 대출 조건 : 일정 기간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함

구분	신규 또는 재계약일(당해 연도)	잔금지급일
1차	2019. 1. 1 ~ 6. 20.	2019. 1. 1 ~ 7. 31.
2차	2019. 4. 1. ~ 9. 20.	2019. 4. 1. ~ 10. 31.
3차	2019. 7. 1. ~ 12. 20.	2019. 7. 1. ~ 2020. 1. 31.

- 다. 대출금 상환 방법 :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상환

대출금	상환 금액	상환기간	비고
3백만원 이하	매월 5만원	최장 60개월	차액은 만기에 정산
3백만원 초과 ~ 3백5십만원 이하	매월 6만원	최장 59개월	
3백5십만원 초과 ~ 4백만원 이하	매월 7만원	최장 58개월	
4백만원 초과 ~ 4백5십만원 이하	매월 8만원	최장 57개월	
4백5십만원 초과 ~ 5백만원 이하	매월 9만원	최장 56개월	

- 라. 상환 상환자 10% 인센티브 지원

• 1년간 정한기일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	: 대출금의 2% 해당액 지급
• 2년간 정한기일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	: 대출금의 3% 해당액 추가지급
• 만기까지 정한기일에 상환을 완료한 경우	: 대출금의 5% 해당액 추가지급

3. 신청 대상

- 가. 공통 기준: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가장
- 1) 만 18세 이하(취학 시 만 22세 이하)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
〈2019년 기준 중위소득 100%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〉 (단위: 원)

가구원수	소득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직장기일차	지역기일차	총 합	비 고
2인	2,907,000	94,808	75,719	95,962		
3인	3,760,000	121,528	115,254	122,961		정기요양보험료 미포함
4인	4,614,000	150,844	151,910	152,850		

※ 가구원수 :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
 ※ 만 18세 이하 : 2001.1.1. 이후 출생자 (취학자녀 : 1997.1.1. 이후 출생자)

- 2)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: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9,000만원 이하
 광역시(세종시 포함) 7,000만원 이하
 그 밖의 지역 6,000만원 이하

※ 임차보증금 보유기준은 「NH 기준주택전세임대 분양카드」 지역별 지원한도 기준에 준함.

- 나. 대출 대상: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- 1) (월세, 전세)보증금이 인상되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처지에 있는 세대
- 2)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코자 하는 세대
- 3) 비주택 거주 (한부모가족복지시설, 여관, 쪽방, 고시원, 비닐하우스, 쉼터 등)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미련이 필요한 세대 등

- 다. 대출 불가 세대: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

- 1)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
- 2) 청소년전부모 중 미성년자 (민법상 대출 불가)
- 3) 가족(직계존비속, 형제자매)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4)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
- 5)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6) 신용관리 대상자 (개인회생, 파산)

- * 단,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이외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,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
- 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(개인별 신청일자 기준) 성실 상환중인 자 (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)
-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

* 대출 불가 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, 향후 서민주택금융채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

4. 사업 일정

구분	일정	비고
대출 신청 서류 접수 (3회 시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차: 2019. 4. 1.(월) ~ 4. 19.(금) 2차: 2019. 6. 10.(월) ~ 6. 28.(금) 3차: 2019. 8. 19.(월) ~ 9. 6.(금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대출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유효 -접수 마감일자 동기우편 도착만 유효 -동기우편 발송 전 구비서류 일체를 파일로 전환하여 이메일 발송 필수
최종 심사 대상자 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차: 2019. 5. 22 (수) 2차: 2019. 7. 26. (금) 3차: 2019. 10. 11. (금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신청자 발표 ①본 센터 홈페이지 공지 ②신청된 신청기관에 공문발송 예정
대출 약정 서류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종심사대상자 발표 시 대출약정절차 안내 예정(본 센터 홈페이지, 신청기관) • 최종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약정서류 제출해야 함 (신청기관에서 선정자로부터 제출받아 본 센터로 발송) 	
대출금 입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출약정서류 접수 완료 후 일정에 맞춰 대출금 지급 입금시기(예정): 1차: 6월중, 2차: 8월중, 3차: 11월중 	

* 세부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

5. 제출 서류

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
구분	구비서류	작성요령
신청 기관	• 서식1. 신청기관 총괄표(엑셀)	-센터 홈페이지 신청서식(서식1~5) 참조
	• 서식2. 신청기관 신청서(현글)	-총괄표는 작성요령에 맞춰 정확한 내용 기입
	• 서식3. 대상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	-신청자 본인인 반드시 자필로 작성
	• 서식5. 상환계획서	
	•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	
신청자	• 현재 거주지 임대계약서 사본 -신청 전 신규(재계약) 임대차계약 완료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실확인서 제출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등본상 주소와 신청자주거지 다를 경우 ② 무상임차비주거지 무상임차의 경우 주민등록주소 및 사용대학확인서 제출 -사실거주지는 사실확인서 제출
	• 서식4. 사실확인서 (해임의 경우)	
	1. 기존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(50%이하)	
	2.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	
	3. 기존 중위소득 52%초과~100%이하 (백1)	
필수 서류	• 청약인증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해당)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: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제출 - (해당) 피부양자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: 사실확인서(서식4) 및 소득증빙서류 제출
	•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	
	• 청약인증 확인서(전체 담입외자 확인)1부	
	• 신용회복 기입부서	
	• 임대인증명서 1부	
해당 담당자	• 신용회복 대상자	-신청인 명의의 청약저축에 한함
	• 만 19세 이상 22세 이하 자녀 중	-가구원 중 장애등급 1~3등급인 경우에 한함
	• 재학증명서	-신용회복대상자에 한하여 제출
		-신용회복위원회에 발급
		-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발급

6. 서류 제출 순서

- * 신청 서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(www.secultihandumo.or.kr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
- *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인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며, 구비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'서식 4. 사실확인서'를 첨부하여야 함

① (신청기관 담당자) 신청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이메일 전 제출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메일 제출처: handumo@seoul.go.kr - 제목 및 파일명: "(기관명) 2019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"(파일일축) - 서식1: 신청기관 총괄표는 엑셀파일 원본 발송 - 나머지 구비 서류는 스캔으로 파일 전환 후 발송 - 이메일 하단에 신청기관담당자 연락처 기재



② (본 센터) 이메일 제출한 스캔자료 검토 후 동기우편 제출 가능 여부 확인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기관 직인, 원본대조(담당자 확인) 등 누락사항 검토 - 제출된 필수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검토 후 신청기관 담당자에 우선 안내



③ (신청기관 담당자) 원본 동기우편 제출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소: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, 2층 서울특별시한부모복지원센터 2019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담당자 앞 - 접수일자 마감일 동기우편 도착분만 유효 * 접수일자 마감일까지 동기우편 미도착분은 인정되지 않음



④ (본 센터) 제출서류 접수 및 확인

7. 신청기관 유의 사항 ★

- 1) 신청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을 통해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- 2) 모든 제출서류의 주민번호는 뒷 7자리를 지우고 제출 바랍니다.
- 3) 「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서식 3)」은 신청자 자필로 작성, '본인 확인 및 자필 확인'란은 신청기관 담당자가 직접 확인 및 서명해야 합니다.
- 4) 「사실확인서(서식 4)」는 신청기관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. (기관 직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)
- 5) 모든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'원본대조(담당자 확인)' 해야 합니다.
- 6) 제출서류 중 신규계약서에는 '확정일자'가 적혀있어야 합니다.
- 7) 주민번호 뒷 7자리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에는 수정테이프 사용 혹은 불펜으로 임의수정이 불가하므로 내용을 잘못 기입한 경우, 정정하지 말고 다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- 8) 근거서류 불충분시 심사불가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. 서류 및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.

8. 대출 진행 기본 원칙

심사 원칙	• 대출을 신청한 대상자의 대출 지급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함
대출 사업 원칙	• 이미 대출을 지급 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 (형평성 고려)
신청 기관 협력지원 원칙	• 대출신청은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단체에서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(개인신청 불가) • 신청기관은 추천 대상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대출 지급기관과 협력하며,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- 신청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가 최종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, 대출신청서류를 대상자로부터 취합하여 본 센터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 - 신청기관에서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(거주지 이전, 연락처 변경 등)가 변경될 경우, 본 센터로 전달하여 주셔야 합니다. - 추후 대출지급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, 신청기관에서는 대출지급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합니다.

9. 문의

-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팀
홈페이지: www.seouthanbumo.or.kr
T. 02-861-3011 | E. hanbumo@seoul.go.kr | F. 070-7469-3024